#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(홍기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72

발의연월일: 2024. 6. 26.

발 의 자:홍기원·복기왕·주철현

박희승 • 양부남 • 송옥주

윤종군 • 박상혁 • 문진석

한준호 · 김병기 · 허 영

문금주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

현행 부동산 규제정책은 「주택법」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 상지역,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지정지역 등으로 분산되어 규정되고 있 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제지역이 중복적으로 지정되어 규제의 목 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, 유관 법령 개정을 통하여 그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가. 투기과열지구의 명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함(안 제39조

제2항 등).

나.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명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변경하고, 아울러 그 규제 강도를 보다 완화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재건 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의 공급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 (안 제76조제1항제7호나목1) 단서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97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 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투기과열지구(이하 "투기과열지구"라"를 "부동산관리지역 2단계(이하 "부동산관리지역 2단계"라"로 한다.

제72조제6항 본문 중 "투기과열지구"를 각각 "부동산관리지역 2단계" 로 한다.

제76조제1항제7호나목1) 단서 중 "투기과열지구 또는 「주택법」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(이하 이 조에서 "조정대상지역"이라 한다)"을 "부동산관리지역 2단계"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"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"를 "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서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"로하며, 같은 호 마목 단서 중 "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"을 "부동산관리지역 2단계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39조(조합원의 자격 등) ① (생 제39조(조합원의 자격 등) ① (현 략) 행과 같음) ② 「주택법」 제63조제1항에 (2) -----따른 투기과열지구(이하 "투기 -----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 (이하 "부동산관리지역 2단계" 과열지구"라 한다)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 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.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 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(매매. 증여,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 되, 상속·이혼으로 인한 양도· 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한 자는 제1항 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. 다만,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 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~ 7. (생략)
- ③ (생략)
- 제72조(분양공고 및 분양신청) ①
  - ~ ⑤ (생 략)
  -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 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 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 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 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 정일(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 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 가일을 말한다)부터 5년 이내 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. 다만, 상속, 결혼,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.
  - ⑦ (생략)
- 제76조(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)
  -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 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  - 1. ~ 6. (생 략)

1. ~ 7. (현행과 같음)
③ (현행과 같음)
제72조(분양공고 및 분양신청) ①
~ ⑤ (현행과 같음)
(b)
<u></u> 부동산관리지
역 2단계
<u>부동산관리지역 2단계</u> -
,
⑦ (현행과 같음)
제76조(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)
①
<u>.</u>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7.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.

가. (생략)

- 나.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수 있다.
  - 1)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. 다만, <u>투기과열지구 또는 「주택법」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(이하 이 조에서 "조정대상지역 (이하 이 조에서 "조정대상지역"이라 한다)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(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)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.</u>

2) ~ 4) (생 략)

다. 나목1)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<u>조</u> 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 또

가. (현행과 같음)
나
·.
1)
산관리지역 2단계
·
2) ~ 4) (현행과 같음)
다
<u>부</u>
동산관리지역 2단계에서 부
동산관리지역 2단계로

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여러명이 소유하게 된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1주택을 공급할수있다.

라. (생략)

마.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. 다만,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(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)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(생략)

<u>.</u>
라. (현행과 같음)
마
동산관리지역 2단계

② (현행과 같음)